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9 조에 기초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퇴직연금제도”라 합니다)를 실시하는 ○○주식회사(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법 제 28 조에서 정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계약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장래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합니다)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가입자별 적립금”이라 함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퇴직연금제도로부터 가입자가 퇴직시에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제 2 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이하“운용방법”이라 합니다)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회사는 제 1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업무를 시행령이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자 (이하 “재위탁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의 세부내용은 별지 1(업무의 재위탁)에 의합니다.

### 제 3 조 【연금규약의 제출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노동부의 신고수리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 4 조 【회사 및 계약자의 책무】

-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하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제 2 조(운용관리업무)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 【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

- ① 회사는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 )의 운용방법을 계약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한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하며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 ③ 회사는 제 2 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반기 ( )회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 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하여 드리며,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 2 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방법별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 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 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⑥ 제 5 항의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서면 또는 회사와 계약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 제6조 【부담금의 계산 및 납입】

- ① 계약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및 납입시기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이후 즉시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기본부담금은 연금규약에 의해 산정 또는 결정된 법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 추가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일시전환부담금은 퇴직보험 등 또는 이 제도 이외의 제도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③ 계약자는 제 2 항 제 1 호의 기본부담금을 규약에 정하여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일 다음날부터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 제7조 【급여의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가 계약자로부터 급여지급 사유의 확인을 받아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 지급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연금자산의 매각지시와 급여의 지급청구를 전달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 소정의 급여지급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청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⑤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를 위한 적립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추가부담금의 적립금을 청구하는 절차는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습니다.

### 제 8 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①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가입자는 제 2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운용현황을 운용방법별로 통합·기록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 )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 1. 우편에 의한 방법
  - 2. 교부에 의한 방법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 4. 그 밖에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 ③ 회사는 제 1 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 제 10 조 【운용지시의 전달 및 기록】

- ① 회사는 가입자별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회사가 가입자별 운용지시를 접수한 날부터 익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지시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계약자가 각 가입자별 운용지시를 취합하여 서면으로 전달
  - 2. 계약자가 각 가입자별 운용지시를 취합하여 전자메일로 전달
  - 3. 가입자가 직접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퇴직연금 사이버 창구를 이용하여 표시한 운용지시
  - 4. 기타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방법
- ③ 가입자별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 선정은 계약자가 부담금 및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때에는 직전 운용지시를 따릅니다.
-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이 판매·중단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재선정하여야 합니다.

### 제11조 【가입자 정보의 통지】

- ① 계약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별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하 “가입자 정보”라 합니다)을 서면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방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가입자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신속히 그 내용을 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해 계약자로부터 통지받은 가입자 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계약자가 회사에 통지한 가입자 정보 및 운용지시를 관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잘못된 정보의 제공 또는 잘못된 운용지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별지 2 참고)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수행합니다.
- ② 계약자는 교육의 위탁 부속계약서에 의해 교육내용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회사는 이 계약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 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 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의 정보 또는 계약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 제 15 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으로 합니다.
-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1 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연장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 년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합니다.

### 제 16 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연금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서면에 의해 상당기간을 정해서 시정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때
  2. 압류, 가압류, 경매, 조세채납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파산, 화의, 법정관리, 회사정리개시의 주장 혹은 결정이 있었던 때
  3. 영업의 폐지, 중요한 재산의 양도나 해산결의를 한 때, 청산이나 임의정리의 절차가 실시된 때
  4. 기타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

### 제17조 【계약종료 후에 퇴직연금제도가 존속하는 경우의 조치】

- ①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퇴직연금제도가 존속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이 계약종료 후에 운용관리업무를 실시할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6 조(계약의 해지)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이 계약의 종료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종료 후 신속하게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는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이 계약에 해당하는 업무의

인계를 실시하되 이 계약의 종료 후에도 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계약종료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종료할 경우의 조치】**

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퇴직연금제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가입자별로 구분된 자산이 개인퇴직계좌 또는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의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실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수수료의 지급】**

계약자는 수수료 부과기준(별지 3 참고)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이하 “운용관리수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가입자(이하 동조에서 "계약자 등"이라 합니다)가 이 계약에 의한 지시·청구·통지·신청·정보 제공 등 제반업무(이하 "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라 합니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사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공인인증서 등)과 실제 제반업무 처리시에 사용한 확인수단이 동일한 것임을 회사가 확인한 경우에, 회사가 계약자 등의 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 처리에 응하여 발생한 계약자 등의 손해
2. 계약자 등이 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연·해태 하거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등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
3. 계약자 등의 이 계약에 의한 제반업무 처리에 회사가 성실히 응하여 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한 계약자 등의 손해
4. 자산관리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이나 자산관리기관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하자가 있는 등 자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자 등의 손해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계약자 등의 손해

#### **제21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 **제 22 조 【인감신고】**

① 계약자는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된 제반서류에 사용된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여 일치한 경우 급여지급 및 기타업무 처리상 인감 도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제 23 조 【이 계약의 변경】**

계약자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이미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이 작성되는 계약서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25 조 【협의 및 준거법】

- ① 이 계약 내용의 해석에 대해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규약, 감독규정 및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 제 26 조 【계약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서의 뜻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 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회사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자 1 부를 보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일 : 2000년 00월 00일

계 약 자 :

회 사 :

(별지 1)

##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 2 조 제 1 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OO 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나. 계약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OO 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 15 조(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 14 조 (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 합니다.



(별지 2)

## 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 1. 교육 위탁계약의 목적

교육 위탁계약(이하 “교육위탁계약”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계약자가 법 제 32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교육을 회사에 위탁 시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 2. 교육인원

교육인원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기파견 및 교육,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 )으로 합니다.

가. 설명회

나. 전자우편(E-mail)

다. 온라인(Web)

라. 문서

마. 기타 이외의 방법 ( )

### 4. 교육내용

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다.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마.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계약자의 매 사업년도 초 계약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내용
교육기간	설명회 : ~ 전자우편 : ~ 온라인 : ~ 문서 : ~ 기타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설명회 : 전자우편 : 온라인 : 문서 : 기타 :

## 6. 수수료

교육방법별로 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수수료
기본수수료	100명 이하 : 인당 5,000원
	100명 초과 ~ 300명 이하 : 인당 4,000원
	300명 초과 ~ 1,000명 이하 : 인당 3,000원
	1,000명 초과 ~ 5,000명 이하 : 인당 2,000원
	5,000명 초과 : 인당 1,000원
설명회시 추가수수료	설명회시간 30분당 50,000원

※ 기본수수료는 모든 교육방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입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 교육방법이 설명회인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외에 시간당 수수료가 추가되며, 설명회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설명회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가. 계약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계약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8. 비밀유지

- 가. 계약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 9. 교육위탁계약의 해지

- 가. 계약자는 교육위탁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나. 다음 각 항의 경우 계약자는 교육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육비용이 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자가 법에 의한 가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한 경우
  - ② 회사가 계약자의 사전 승인없이 이 교육위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③ 회사가 이 교육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 계약자는 교육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지사유를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 라.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위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10. 일부교육의 재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계약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

재위탁 교육기관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재위탁 교육내용	
기타	

## 11. 기타사항

- ① 본 교육위탁계약은 계약자와 회사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와 회사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일 : 2000년 00월 00일

계 약 자 :

회 사 :

(별지 3)

### 수수료 부과기준

1. 이 계약의 제 19 조(수수료의 지급)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합니다.

① 초년도 : 초년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해 다음의 올(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부담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부담금 납입시 납입합니다.

부담금	수수료율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주) 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은 제외)으로 하며, 이미 납입된 부담금과 누적하여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② 2차년도 이후 : 2차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하며, 계산일 기준 직전 1년간 적립금 평잔에 대해 다음의 올(사용자에 소속된 가입자의 적립금(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을 포함)을 합산하여, 수수료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납입합니다.

적립금	수수료율
10억 이하	0.70%
10억 초과 ~ 30억 이하	0.60%
30억 초과 ~ 500억 이하	0.55%
500억 초과 ~ 1,000억 이하	0.50%
1,000억 초과	0.45%

주) 적립금 평잔은 “직전 1년간 매월 계약해당일 기준 적립금을 합한 금액/12”로 산출합니다.

③ 장기유지 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할인합니다. 최초 부담금 납입시점을 1차년도로 적용합니다.

계약년수	할인율
5차년도 이후	3%

다만, 시행일(2000년 00월 00일)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 계약해당일(계약해당일에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최초 부담금 납입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2. 이 계약의 운용관리수수료는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운용관리수수료는 자산관리계약의 부담금이나 적립금에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입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납입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운용관리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취했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도해지일로부터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환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합니다.

3. 다만,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25일까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2년 0월 00일(회사에서 정한 판매개시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시행일 이전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시행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